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본 안내책자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담당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목 차

Contents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1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2
2. 고용장려금 찾기 ··· 3

Ⅱ. 고용창출장려금 ··· 5
1. 사업개요 ··· 6
2. 지원 절차 ··· 7
3. 지원 유형 ··· 9
4. 지원 제외근로자 ··· 10
5. 지원제외 사업주 ··· 13
6. 감원방지 의무 ··· 15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 16

Ⅲ. 고용안정장려금 ··· 27
1. 사업개요 ··· 28
2. 지원 절차 ··· 29
3. 지원 유형 ··· 31
4. 지원 제외 근로자 ··· 32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 33

Ⅳ. 고용유지지원금 ··· 43
1. 지원 개요 ··· 44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47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 52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 55
1. 청년내일채움공제 ········ 56
2.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 58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60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62
5. 고령자 고용지원금 ········ 64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67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68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70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 71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73

V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75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76

VIII. 참고사항 ········ 79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 80
2. 부정행위 조치 ········ 82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83
4. 신중년 적합직무 ········ 85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99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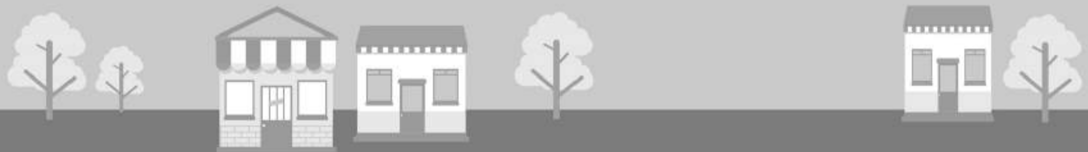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구분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일 ·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2 고용장려금 찾기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연장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6
②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9
③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20
④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1
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
⑥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56
⑦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	64
⑧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6

2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① 근로자에게 육이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②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9
③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33
④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5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7
⑥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2

3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7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2

4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8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0
③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	71
④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3

Ⅱ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6. 감원방지 의무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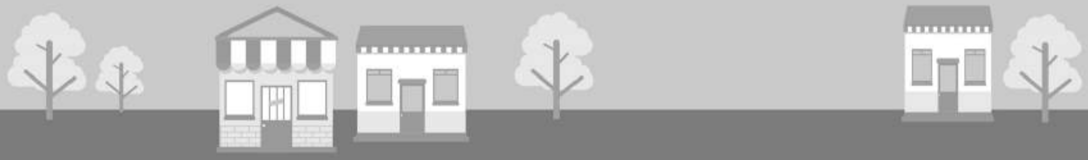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을 받기 위해

  - **[공모형]** 사업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공모형), 신중년적합직무

  - **[공모형]** 사전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없이 신규채용 등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2 지원 절차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	①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② 심사 및 승인
사업주	③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④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⑤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공모형】 ① → ② → ③ → ④ → ⑤ / 【요건형】 ④ → ⑤

①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지원 내용</th></tr>
<tr><td rowspan="2">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td><td>일자리
함께하기
지원</td><td>•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td></tr>
<tr><td>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td><td>•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td></tr>
<tr><td rowspan="2">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요건심
사형)</td><td>국내복귀
기업 지원</td><td>•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td></tr>
<tr><td>고용촉진
장려금</td><td>•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td></tr>
</table>

4 지원 제외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등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 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II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⑧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⑤ 비상근 촉탁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1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① ~ ⑤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와 동일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⑦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고용촉진장려금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6 감원방지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요건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아래 가~다의 유형) 중 하나를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❶)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❷)

❶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16P 참고)를 제외하고 산정

❷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참고 : 제도 도입 전후 비교기간 예시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비**)를 지원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2년간 지원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으로 지원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사업추진체계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❶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❷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❸ 고용보험 가입

❹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Ⅷ. 참고사항 / 04. 신중년 적합직무 참조(85P)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단,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p22 참고)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 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18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Ⅲ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소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2 지원 절차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	①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체출
고용센터	② 심사 및 승인
사업주	③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④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⑤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공모형】 ❶ → ❷ → ❸ → ❹ → ❺ / 【요건형】 ❹ → ❺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 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월당 활용일수에 따라 월당 15~3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불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4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정규직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정규직전환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❶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정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만 대상이 됨

❷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수준 및 한도

◎ ❶ 지원수준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5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간접노무비30만원)
- (임금증가분이 20만원 이상) 월 정액 30만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0+간접노무비30만원)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만 지급)

❷ 지원 인원 한도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경우는 지원 한도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을 한도로 함

※ 사업 참여 회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사례) 한도인원 30명인 경우 1차 15명, 2차 10명, 3차 5명 분할은 가능

지급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지급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 경우에 지급(1개월분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

유형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간접노무비	30만원 (정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은 부지급(간접노무비만 지급)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 정액으로 지급)

-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음

지급기간 및 신청

- (지급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
- (지급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지급신청서 작성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원격근무제	• 재택·원격근무일에 업무시작(업무종료)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업무시작(업무종료)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 **(지원 인원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함

지급기간 및 주기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Ⅵ. 고용환경개선지원 /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참조(73P)

코로나19 대응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시행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 수시 심사	•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지방노동관서장의 수시 승인	
재택근무 근태관리	•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실시간으로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 보고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기록 등의 증빙자료 제출
재택근무 사업승인 간소화	• 임신부, 초등자녀 근로자 포함한 재택근무 활용 시 사업계획서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시행시기) '22.1.1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지원요건

◎ ❶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❷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제출서류

◎ ❶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❷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지원수준

❶ 육아휴직 지원금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월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월 30만원

※ 만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4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기간 및 주기

◎ ❶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❷ 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 다만, 동 휴가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3. 이후 동 휴가 ·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Ⅳ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개요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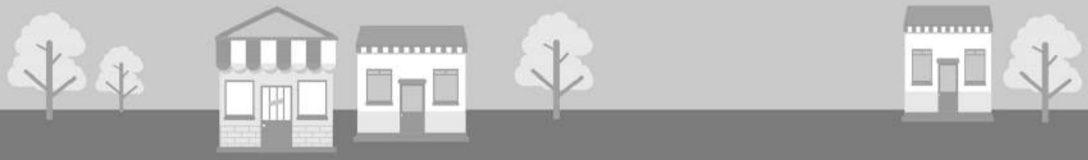

1 지원 개요

◎ 유형별 지원기준

유형		지원 기준
유급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0조의2,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휴직	
무급	휴업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 해당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34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휴직	

◎ 유형별·업종별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최소한 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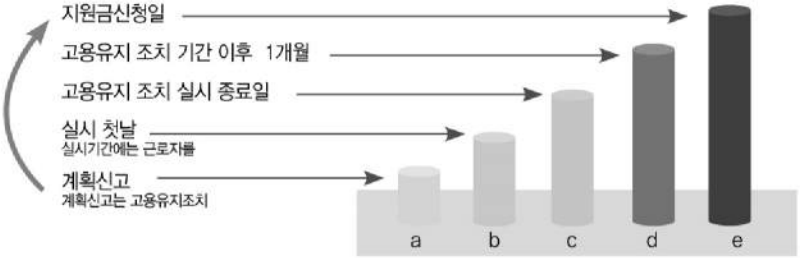

◎ 지원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피보험 가입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는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규채용 허용 사유(불가피한 경우)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전에 채용을 내정하여 채용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경영 구조상의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원칙)
  - 다만, '22년에 한하여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20~'21년), 기타 경영 및 노동 여건 제반 사항 검토가능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50%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부지급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❶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❷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❸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❹ 사업주

❶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①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 매출액 등 비교 시점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적용시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매출액·생산량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재고량 50%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년, '22년)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20년, '21년 매출액 등이 대폭 감소한 상황 감안

- 파견·수급 사업주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의 경우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8호)

❷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사후 신고 인정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생략 가능

❸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총근로시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 근로시간의 합계(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❹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일반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유급휴업·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1일한도 6.6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22.6.30.까지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차감 없이 지원

◎ 지원기간

유급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보험연도와 관계없이 총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매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근로시간으로 봄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두가지 유형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 1일로 산정

2 휴직

지원대상

◎ 휴직의 의미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 경우 휴직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된 '휴업'의 개념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두가지 유형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22.12.31.까지 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인정(단, 해당 보험연도 기간 중에 180일까지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한함)

❶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재고량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❷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 시 해당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까지)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실시 *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 다만, 코로나 위기 심화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까지 무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한시 연장(90일)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월 50만원을 정액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일반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휴직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1일한도 6.6만원	

* '22.12.31.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 지원절차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심사*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심사과정

- 심사위원회(관할 청 및 제주고용센터) 승인 필요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소재지 관할 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관할 청)
→ 심사위원회 개최(관할 청별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